

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
제의연월일	2026. 3. 17.
제 의 자	의 장

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의연월일: 2026. 3. 17.

제 의 자: 의 장

1. 제의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「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검사위원은 7명으로 선임함.
- 위원 2인은 구미시의회 의원으로 하고, 대표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 2인 중 다선, 연장자 순으로 선임함.
- 위원 2인은 전직시의원으로 함.
- 위원 1인은 전직공무원으로 함.
- 위원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함.
- 위원 1인은 공인세무사로 함.
- 검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함. (2026. 4. 22. ~ 5. 11.) 예정

3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
- 「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및 제3조

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(안)

2025회계연도 구미시 세입·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
1. 결산검사위원

직 위	성 명	구 분	비 고
대표위원	추 은 희	구미시의회 의원	
위 원	소 진 혁	구미시의회 의원	
위 원	김 정 곤	전)구미시의회 의원	
위 원	김 성 현	전)구미시의회 의원	
위 원	김 차 병	전)구미시의회 사무국장	
위 원	배 일	공인회계사	
위 원	정 성 재	공인세무사	

2. 검사기간 : 2026. 4. 22. ~ 5. 11. (20일간) 예정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□ 「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위원의 정수) 구미시 결산검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이라 한다)의 정수는 5명 이상 7명이하로 한다.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미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가 선임한다.

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른다.

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.